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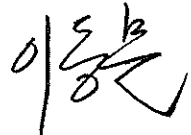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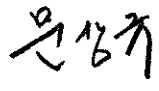


노사협의회 의결사항	
회의일시	2014.2.27.(금)
회의장소	서울시청 인사과 회의실
협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관리자의 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상업무 : ①현장작업 ②현장의 작업안전관리 ③작업실적의 확인·보고 ④작업요청 <li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⑤작업자 근태관리·보고 ⑥불량처리와 재발방지 대책 ⑦시설이상 발견과 복구 ⑧현장 정리정돈 - 개선업무 : ①불량률 저감 ②작업 소요시간 단축 ③안전재해 방지 ④현장의 소통 <li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⑤현장 개선활동의 활성화 ○ 현장관리자 수당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원칙 : 현장관리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임하여 활용하며, 공무직 5명 미만은 현장관리자를 두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운영함 · 동일직종에서 5명 이상의(공무직, 기간제, 준공무직, 공익 등 포함) 작업인원을 인솔하여 현장관리자 업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 - 현장관리자 수당은 현장업무에 중사하는 자(사무실근무자 제외)에게만 지급하며, 인원변동으로 5명미달시 지급중단 ※ 단, 도로보수원의 경우 현장이 광범위하고, 작업강도를 감안하여 5명 미만 현장관리자에게도 지급 ○ 지급대상 : 직종별 현장관리자 ○ 지급금액 : 월5~10만원 (작업관리 인원 및 업무특성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) ○ 적용기간: 2015.2.16.~ 2020.2.16. ※ 직급제 도입등 공무직제의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와 시행후 문제 발생시 재논의 함
의결사항	상 동
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	본 의결안건은 2015.1.1.자부터 소급 지급함
기 타 참고사항, 전 분기의 결 된사항 이행 상황	

※ 회의록은 분기별로 노사간의 회의내용을 기재하여 비치함.
회의록을 회사에서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임
관련 규정 :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

(뒷쪽)

	근로자위원	서 명	사용자 위원	서 명
참 석 위 원 서 명	서울지역공무직지부장 이우건		서울시 인사과 공무직관리팀장 이동문	
	서울지역공무직지부 부지부장 서승래		담당주무관 문상규	

※ 회의시 참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첨부하여 비치함.